발간등록번호
2026-KIHF-027

▶ 아이돌봄사 누리집

▶ 아이돌봄사 자격관리 안내서 다운로드

2026년도

아이돌봄사 자격관리 안내서

성평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목차(Contents)

Part I

아이돌봄사 자격 개요

1. 개념 및 법적근거 ····· 2
2. 아이돌봄사 자격 취득 및 관리 ····· 3
3. 아이돌봄사 자격관리 추진 관리 ····· 8

Part II

아이돌봄사 양성교육

1. 교육 개요 ····· 10
2. 교육 신청 ····· 12
3. 교육 과정 ····· 14
4. 교육 수료 ····· 18

Part III

아이돌봄사 자격증 발급

1. 자격증 발급 개요 ····· 22
2. 자격증 신청 ····· 22
3. 자격검정 ····· 27
4. 적성·인성 검사 ····· 29
5. 자격증 조회 ····· 31

Part IV

아이돌봄사 자격 관리

1. 보수교육 ····· 34
2.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 ····· 38

Part V

관련 서식

1. 교육 수료증 ····· 42
2. 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 43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 44
4. 범죄경력 조회 요청(동의)서 ····· 46
5. 아이돌봄사 자격증 서식 ·····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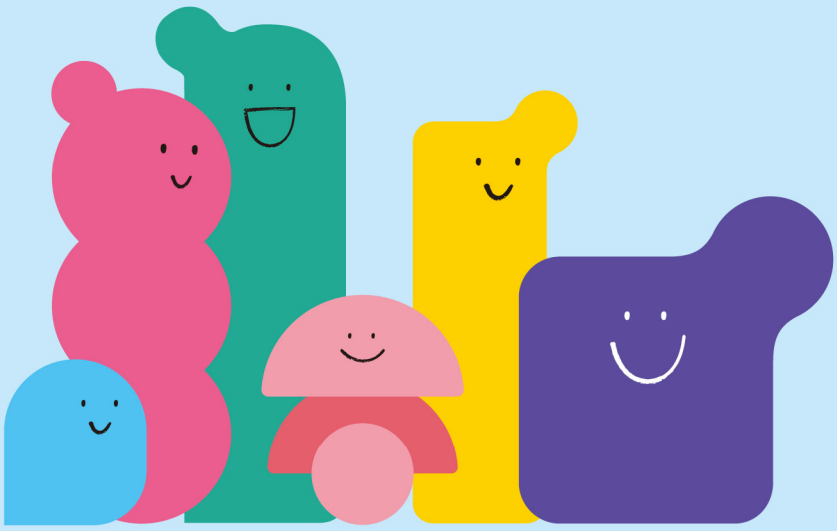

Part I

아이돌봄사 자격 개요

1. 개념 및 법적근거
2. 아이돌봄사 자격 취득 및 관리
3. 아이돌봄사 자격관리 추진 관리

아이돌봄사 자격 개요

1 개념 및 법적근거

가. 아이돌봄사란

○ 아이돌봄사란 일정 기간 교육을 수료하고 자격검정을 통해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개별가정 등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력임

-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 신설(2026.4.23.시행, 법률 제20932호)

관련 법령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아이돌봄사"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제7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5. "육아도우미"란 제7조에 따른 아이돌봄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7조(아이돌봄사의 자격)**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적성·인성 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아이돌봄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1. 제9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개설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는 교육과정의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아동인권과 아동학대 예방 교육
2. 아동의 안전관리 교육
3. 성희롱 예방 교육
4. 아이돌봄사의 인성함양
5. 장애아동에 대한 이해와 인식 개선 교육
6.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나. 자격제 목적 및 취지

○ 국가가 정한 교육과정 이수와 자격 검정을 통해 자격을 취득하도록 함으로써 전문성과 역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아동 발달, 안전, 응급 상황 대처 등에 대한 전문적인 돌봄 제공 가능

○ 돌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범죄경력조회 등 결격사유 확인을 마친 아이돌봄사가 공공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자격을 갖추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여 돌봄인력의 신뢰성·전문성 강화

다. 유의사항

○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아이돌봄사가 될 수 없음

아이돌봄사 결격사유(「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아이돌봄 지원법」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10. 「아이돌봄 지원법」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2 아이돌봄사 자격 취득 및 관리

[자격 취득 절차 요약] 양성교육 수료 → 자격증 신청 → 자격 검정 → 적성·인성검사 실시 → 자격증 발급

가. 아이돌봄사 양성교육 수료

○ 자격을 취득하려면 양성교육을 먼저 수료하여야 하며, 아이돌봄사 양성교육과정 구분은 아래와 같음

○ 교육과정 구분

교육과정	교육시간		방식	대상	신청경로
표준교육과정	120시간	아이돌봄사 교육기관	집합교육	- 아이돌봄사 자격 취득 희망자	고용24 (www.work24.go.kr)
단축교육과정*	40시간			- 간호조무사,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등 유사자격 소지자 - 아동양육관련 분야 학사 이상 소지자	

교육과정	교육시간		방식	대상	신청경로
직무연수 과정	16시간	자격관리 전담기관	온라인 교육	- 아래에 해당하는 자 중 양성교육 면제자가 아닌 자 •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육교사 •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 -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자격(면허) 소지자	KIHF온라인교육플랫폼 (www.edu.kihf.or.kr)
면제**	-	-	-	- 보육교사 1급 자격 소지자 -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 소지자 - 초등학교 정교사 1급 자격 소지자 - 특수학교(유치원 및 초등학교 과정으로 한정) 정교사 1급 자격 소지자	-

*** 단축교육과정 대상자**

간호조무사,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아동양육관련 분야 학사 이상 소지자
- 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문화, 다문화가족, 가족역량강화, 장애아동, 영유아 관련* 전공 이수자

* 학과(전공) 및 학위명에 '(영)유아, 아동, 보육' 단어가 포함되면 인정

** 고용24 홈페이지(work24.go.kr) 〉 취업지원 〉 취업가이드 〉 학과정보를 통한 검색 또는 가까운 교육기관으로 문의

**** 양성교육 면제자(「(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제2조)**

① **보육교사 1급 자격 소지자** :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자격
②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 소지자** :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자격
③ **초등학교 정교사 1급 자격 소지자**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동법 [별표2]에 따른 자격
④ **특수학교(유치원·초등학교) 정교사 1급 자격 소지자**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동법 [별표2]에 따른 자격

나. 아이돌봄사 자격증 신청

- 신청주체: 양성교육 수료자 또는 면제자

  ※ 신청자 중 결격사유가 없고, 적성·인성 검사를 수행한 자에 한하여 자격증 발급

- 검증 및 발급주체: 아이돌봄사 자격관리 전담기관(한국건강가정진흥원)

- 신청방법: 아이돌봄사 누리집(care.idolbom.go.kr) 본인인증 후 신청

  ※ 성명,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본인인증 신청 필수

- 제출 서류

제출방법	서류
직접 입력	발급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직접 체크(확인)	교육과정(표준·단축·직무연수), 보유 자격 등
파일 업로드(첨부 필수)	자격증 사진, 교육수료증, 건강진단서, 자격(면허)증 사본 또는 자격증명서(해당자)*

* 자격(면허)증 사본 또는 자격증명서: 직무연수과정 수료자 및 양성교육 면제자 제출서류

** 아이돌봄사 누리집을 통해 한 번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자격증 발급절차

서류 제출	자격 검정	적성·인성 검사 실시	자격증 발급
[공통 제출서류] ❶ 발급신청서(사진 등) ❷ 개인정보동의서 ❸ 교육수료증 ❹ 건강진단서 **[추가 제출서류]** * 직무연수과정 수료자, 양성교육 면제자 해당 ❺ 자격증(면허증) 사본 또는 자격증명서	제출서류 적합성 검토 결격사유 확인	온라인 실시	온라인 출력 (즉시)

다. 아이돌봄사 보수교육

○ 아이돌봄사 자격 소지자는 자격증을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한 후부터 매년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관련 법령

「**아이돌봄 지원법**」 **제10조(보수교육)** ① 아이돌봄사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6조(보수교육)**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자격증을 취득한 후 1년이 지난 아이돌봄사를 대상으로 매년 30시간 이내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시간으로 한다.

○ 아이돌봄사는 3년 연속 보수교육 미이수 시 자격이 정지될 수 있으며,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자격이 취소됨

관련 법령

「**아이돌봄 지원법**」 **제32조(아이돌봄사 자격정지)**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2. (생략)
3. 제10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3의2. ~ 7. (생 략)

「**아이돌봄 지원법**」 **제33조(아이돌봄사 자격취소)**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3의3. (생략)
4. 제32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5.~ 7. (생 략)

라. 자격 발급 참고사항

- (부칙 제3조) 시행일('26.4.23.) 기준 채용되어 있는 아이돌보미는 아이돌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봄
- (부칙 제4조) '24년부터 시행된 표준교육과정(120시간) 또는 단축교육과정(40시간)을 이수한 사람은 개정 법령에 따른 아이돌봄사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

참고

「**아이돌봄 지원법**」 **부칙 제3조(아이돌봄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아이돌보미로 채용되어 있는 사람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아이돌봄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아이돌보미 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된 사람은 제3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아이돌봄사 자격이 정지되거나 제3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아이돌봄사 자격이 취소된 사람으로 본다.

「**아이돌봄 지원법**」 **부칙 제4조(아이돌봄사 교육과정 이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양성교육을 수료한 사람 중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은 제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아이돌봄사 자격 취득 흐름도]

단계	절차		주체
1단계 (교육수료)	교육 신청	• 아이돌봄사 교육기관에 교육 신청 ※ 전국 아이돌봄사 교육기관 목록은 아이돌봄사 누리집 참고	희망자
	교육 수료	• 교육유형에 따라 해당 과정 수료 * 표준교육과정(120시간/대면): 아이돌봄사 자격 취득 희망자 * 단축교육과정(40시간/대면): 간호조무사,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아동양육관련 분야 학사 이상 소지자 * 직무연수과정(16시간/비대면):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초·중·고등학교 교사 중 양성교육 면제자가 아닌 자,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희망자
	수료증 발급	• 수료 기준 충족 시 **수료증 발급** * 표준교육과정 및 단축교육과정: 아이돌봄사 교육기관장 발행 * 직무연수과정: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발행	아이돌봄사 교육기관 /자격관리 전담기관
2단계 (자격신청)	구비서류 제출	•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수료증, 건강검진 결과서 등 서류 등록	희망자
3단계 (자격검정)	자격검정	• 제출 서류 검토, 결격사유 조회	자격관리 전담기관
4단계 (적성·인성 검사)	적성·인성 검사	• 온라인 적성·인성 검사 실시	희망자
5단계 (자격증 발급)	자격증 발급	• 발급방법: 온라인(PDF) 출력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소요	자격관리 전담기관 /희망자

3 아이돌봄사 자격관리 추진 관리

가. 아이돌봄사 자격관리 업무 추진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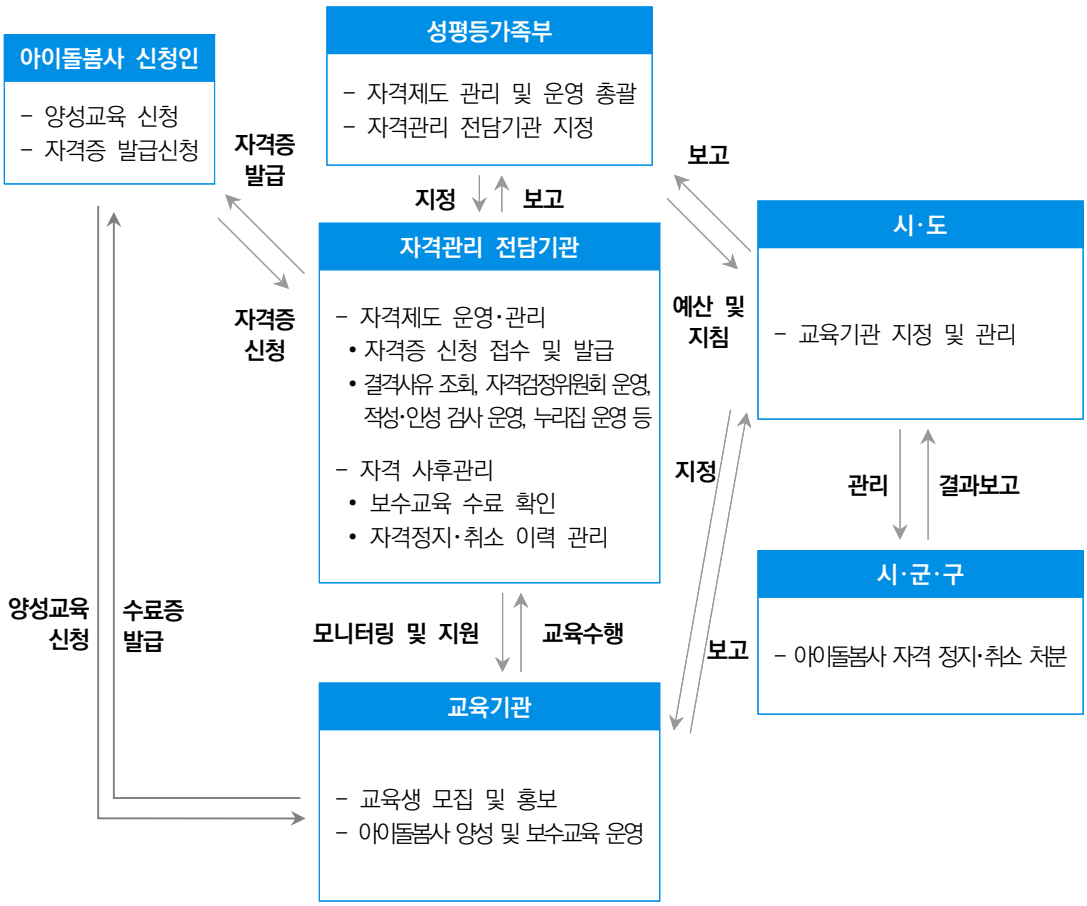

Part II

아이돌봄사 양성교육

1. 교육 개요
2. 교육 신청
3. 교육 과정
4. 교육 수료

아이돌봄사 양성교육

1 교육 개요

가. 아이돌봄사 양성교육 개요

○ 아이돌봄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먼저 양성교육을 수료하여야 함

관련 법령

「**아이돌봄 지원법**」 **제7조(아이돌봄사의 자격)**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적성·인성 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아이돌봄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1. 제9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개설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제2조(아이돌봄사의 자격)**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말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
2.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
3.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과정으로 한정한다) 정교사 1급 자격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아이돌봄사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등)** ①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이돌봄사의 교육과정은 80시간 이상의 교과학습과 10시간 이상의 실습으로 한다. 다만,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과정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료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육교사[「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외한다]
2.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영 제2조제2호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외한다)
3.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영 제2조제3호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외한다)
4.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5. 그 밖에 아이돌봄사의 자질이 있다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양성교육 이수를 희망하는 자는 시·도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 교육을 신청하여 정해진 교육과정을 대면(집합)교육으로 수료하거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온라인교육플랫폼에서 온라인 교육을 수료하여야 함

※ 보육교사 1급, 유치원 정교사 1급, 초등 정교사 1급, 특수교사(유치원·초등학교 과정으로 한정) 1급 자격 소지자의 경우 양성교육 면제

구분	표준교육과정	단축교육과정	직무연수과정
교육시간	120시간	40시간	16시간
구성	이론 40시간 + 실기 60시간 + 현장실습 20시간	이론 7시간 + 실기 27시간 + 현장실습 6시간	온라인 16시간
교육대상	아이돌봄사 자격 취득 희망자	간호조무사,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아동양육관련 분야 학사 이상 소지자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초·중·고등학교 교사, 의료인 중 양성교육 면제자가 아닌 자 (지침 3p 참조)
교육방법	집합교육(대면)	집합교육(대면)	온라인교육(비대면)
교육운영	아이돌봄사 교육기관(고용 24 또는 교육기관 직접 접수)		KIHF온라인교육플랫폼
수료기준	총 교육시간의 80% 이상 수료(현장실습 100% 참석)		총 교육시간의 90%(15시간) 이상 수료

*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교육기관의 교육 신청 가능
** 고용24 홈페이지에 미개설된 교육의 경우 아이돌봄사 교육기관에 개별 문의

나. 교육 신청 대상

- 교육대상(공통)
  - 국민(만 19세 이상)
  - 외국인: 체류조건, 체류기한 등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 자
- 표준교육과정(120시간) 대상
  - 아이돌봄사 자격 취득 희망자
- 단축교육과정(40시간) 대상
  - 유사 자격 소지자 및 유사 전공자

자격 구분	근거 법령
간호조무사	「**간호법**」 제6조에 따라 간호조무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
건강가정사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요양보호사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청소년지도사	「**청소년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아동양육관련 분야 학사 이상 소지자	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문화, 다문화가족, 가족역량강화, 장애아동, 영유아 관련* 전공 이수자 * 학과(전공) 및 학위명에 '(영)유아, 아동, 보육' 단어가 포함되면 인정

※ 고용24 홈페이지(work24.go.kr) 〉 취업지원 〉 취업가이드 〉 학과정보를 통한 검색 또는 가까운 교육기관 문의

○ 직무연수과정(16시간) 대상

- 유사 자격 소지자

자격 구분	근거 법령
보육교사	•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3항 ※ 위 법령에 따른 자격 소지자 중 양성교육 면제자가 아닌 자
유치원 교사	•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 위 법령에 따른 자격 소지자 중 양성교육 면제자가 아닌 자
초·중·고등학교 교사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 위 법령에 따른 자격 소지자 중 양성교육 면제자가 아닌 자
의료인	• 「의료법」 제2조제1항(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2 교육 신청

가. 교육 신청 안내

[표준교육과정·단축교육과정]

○ 신청 기간: 교육기관의 모집 일정에 따른 수시 모집·공고

○ 신청 접수: 아이돌봄사 교육기관으로 신청

신청방법	안내
국민내일배움카드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교육 조회 및 신청·접수
자부담	개별 교육기관 신청

○ 신청 절차: 본인 유사 자격 확인 → 교육 과정 신청(표준 또는 단축) → 교육 수료

※ 교육기관에서는 수강자 등록 전 관련 자격증 확인 필수

○ 교육 수강료

- 자부담비는 교육기관 카드결제 또는 은행계좌를 통해 입금

구분	국민내일배움카드	자부담
표준교육과정(120h)	90% 선 자부담(423,020원), 환급기준 달성 시 전액(469,800원) 환급	100% 자부담(470,000원)
단축교육과정(40h)	90% 선 자부담(162,000원), 환급기준 달성 시 전액(180,000원) 환급	100% 자부담(180,000원)

[직무연수과정]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 신청 접수: KIHF온라인교육플랫폼(www.edu.kihf.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 절차: 대상자격 확인(보육교사, 교사, 의료인 등) → KIHF온라인교육플랫폼 회원가입 →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 확인(아이돌봄사 직무연수과정/16시수) → 교육 신청 및 수료 → 수료증 출력(온라인 PDF)
- 교육 수강료: 무료

나. 국민내일배움카드 환급 기준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훈련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취업한 경우 환급됨

[국민내일배움카드 환급기준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6조3 참조]

(아래조건 모두 충족, 계좌 한도 초과 부담한 금액은 제외)

❶ 국민내일배움카드 수료기준 달성(전체 교육일수의 80% 이상 출석)
❷ 돌봄서비스직(육아) 관련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피보험자 자격취득
❸ 취업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돌봄서비스 분야에 취업한 날이 **180일 이상**
※ **단, 취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환급 가능**

참고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및 교육훈련 참여 절차**

고용24 회원가입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사전 신청	훈련과정 등록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교육 참여
회원가입 (www.work24.go.kr)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 (관할고용센터 승인여부결정) 훈련동영상 시청 (20분 내외)	아이돌봄사 훈련과정 등록	공인인증서 등록 및 로그인 후 발급신청서 작성	교육수료 (80% 이상)

※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계좌 발급일로부터 5년 간 유효

3 교육 과정

가. 세부 교육과정

○ 표준교육과정(120시간)

영역	분야	교과목	교육시수	교과학습	실습
Ⅰ. 아이돌봄 서비스 개요	아이돌봄 서비스의 내용	아이돌봄서비스의 이해	3	3	-
		아이돌봄서비스의 실제	2	2	-
		아이돌봄 이용 가정의 특성	3	3	-
	아이돌봄 역할	아이돌봄의 직무	3	3	-
		아이돌봄의 직업윤리	2	2	-
	소 계		**13**	**13**	**0**
Ⅱ. 아동 발달의 이해와 돌봄	영아 돌봄	영아 발달의 이해	3	3	-
		영아 신체돌봄1: 영양	3	3	-
		영아 신체돌봄2: 수면·배변·청결	3	3	-
		영아 정서돌봄	3	3	-
		영아 놀이지원	3	3	-
		영아의 특성과 행동지원	3	3	-
		영아 돌봄의 실제	3	3	-
	유아 돌봄	유아 발달의 이해와 돌봄의 실제	3	3	-
		유아 신체돌봄과 생활지원	3	3	-
		유아 놀이지원	3	3	-
		유아의 특성과 행동지원	3	3	-
	학령기 아동돌봄	학령기 아동 발달의 이해와 돌봄의 실제	3	3	-
		학령기 아동 생활지원1: 신체 돌봄	2	2	-
		학령기 아동 생활지원2: 생활시간관리	2	2	-
		학령기 아동의 특성과 행동지원	3	3	-
	가정과의 소통	양육자와의 소통	2	2	-
		다양한 가족 이해와 소통	2	2	-
	소 계		**47**	**47**	**0**
Ⅲ. 아동 건강의 이해와 돌봄	안전관리와 돌봄	안전한 아이돌봄의 이해	2	2	-
		가정에서의 안전한 돌봄	3	3	-
		실외에서의 안전한 돌봄	3	3	-
		긴급상황 및 재난 대응	2	2	-
		응급처치의 이해와 실제	3	3	-

영역	분야	교과목	교육시수	교과학습	실습
	건강관리와 돌봄	아동의 신체특성과 돌봄	3	3	-
		감염병 예방 및 관리	2	2	-
		주요 질병 예방 및 관리	3	3	-
	장애의 이해와 돌봄	장애 이해와 장애인식 개선	2	2	-
		영아 발달지연 이해와 돌봄	3	3	-
		유아 발달지연 이해와 돌봄	3	3	-
	아동권리와 돌봄	아동권리의 이해와 돌봄	2	2	-
		아동학대의 발견과 신고	3	3	-
		아동학대 예방 실무	3	3	-
		성인지감수성 이해와 실천	3	3	-
	소 계		**40**	**40**	**0**
Ⅳ. 실습	사전교육	현장실습 오리엔테이션	2	-	2
	현장실습	현장실습	16	-	16
	사후멘토링	실습 사후컨설팅	2	-	2
	소 계		**20**	**0**	**20**
전체			**120**	**100**	**20**

○ 단축교육과정(40시간)

영역	분야	교과목	교육시수	교과학습	실습
Ⅰ. 아이돌봄 서비스 개요	아이돌봄 서비스의 내용	아이돌봄서비스 이해 및 직업윤리	1	1	-
		아이돌봄서비스의 실제	1	1	-
	소 계		**2**	**2**	**0**
Ⅱ. 아동 발달의 이해와 돌봄	영아 돌봄	영아 발달의 이해	1	1	-
		영아 돌봄 : 수유지원	1	1	-
		영아 돌봄 : 식사 및 간식지원	1	1	-
		영아 신체돌봄과 생활지원	1	1	-
		영아 신체돌봄 : 청결·위생지원	1	1	-
		영아 정서 돌봄 및 지원	1	1	-
		영아 놀이지원	1	1	-
		영아의 특성과 행동지원	1	1	
	유아 돌봄	유아 발달의 이해와 돌봄의 실제	1	1	-
		유아 신체돌봄과 생활지원	1	1	-
		유아 놀이지원	1	1	-
		유아의 특성과 행동지원	1	1	-

영역	분야	교과목	교육시수	교과학습	실습
	학령기 아동돌봄	학령기 아동 돌봄의 실제	1	1	-
		학령기 아동 생활지원 : 생활시간관리	1	1	-
	가정과의 소통	양육자와의 소통	1	1	-
	소 계		**15**	**15**	**0**
Ⅲ. 아동 건강의 이해와 돌봄	안전관리와 돌봄	안전한 아이돌봄의 이해	1	1	-
		가정에서의 안전한 돌봄 : 놀이·수면 공간의 안전	1	1	-
		가정에서의 안전한 돌봄 : 일상 공간의 안전	1	1	-
		실외에서의 안전한 돌봄	1	1	-
		긴급상황 및 재난 대응	1	1	-
		응급처치의 이해와 실제	1	1	-
		응급처치 실습	1	1	-
	건강관리와 돌봄	아동의 신체특성과 돌봄	1	1	-
		감염병 예방 및 관리	1	1	-
		주요 질병 예방 및 관리	1	1	-
	장애의 이해와 돌봄	장애 이해와 장애인식 개선	1	1	-
		영아 발달지연 이해와 돌봄	1	1	-
		유아 발달지연 이해와 돌봄	1	1	-
	아동권리와 돌봄	아동학대의 발견과 신고	1	1	-
		아동학대 예방 실무	1	1	-
		긍정양육 원리	1	1	-
		성인지감수성 이해와 실천	1	1	-
	소 계		**17**	**17**	**0**
Ⅳ. 실습	사전교육	현장실습 오리엔테이션	1	-	1
	현장실습	현장실습	4	-	4
	사후멘토링	실습 사후컨설팅	1	-	1
	소 계		**6**	**0**	**6**
전 체			**40**	**34**	**6**

직무연수과정(16시간)

영역	분야	교과목	교육시수
Ⅰ. 아이돌봄 서비스 개요	아이돌봄 서비스의 내용	아이돌봄서비스 이해 및 실제	1
		아이돌봄 이용가정의 특성 및 양육자와의 소통	2
	아이돌봄 역할	아이돌봄의 직무 및 직업윤리	1
	소 계		**4**
Ⅱ. 아동 발달의 이해와 돌봄	영아돌봄	영아 발달의 이해와 돌봄의 실제	1
		영아 신체돌봄	1
		영아 정서돌봄	1
		영아 놀이지원	1
	유아돌봄	유아 발달의 이해와 돌봄의 실제	1
		유아 놀이지원	1
	학령기 아동돌봄	학령기 아동 발달의 이해와 돌봄의 실제	1
		학령기 아동의 특성과 행동지원	1
	소 계		**8**
Ⅲ. 아동 건강의 이해와 돌봄	안전관리와 돌봄	안전한 아이돌봄의 이해	1
		아동권리의 이해와 돌봄	1
	아동권리와 돌봄	아동학대의 신고 및 예방	1
		성인지감수성 이해와 실천	1
	소 계		**4**
전 체			**16**

4 교육 수료

가. 교육 수료 기준

[표준교육과정·단축교육과정]

- 출석 및 실습 수료기준을 통과한 자에게 수료증 발급[서식1호]
  - 출석 : 전체 교육시간의 80% 이상
    ※ 단,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자의 경우, 국민내일배움카드 수료기준도 충족해야 환급 가능

*** 국민내일배움카드 수료 기준**

- 수업일 수가 **40일 이상**인 경우: **전체 일**의 80% 이상 출석
- 수업일 수가 **40일 미만**인 경우: **전체 수업 분수**의 80% 이상 출석
- 1일 수업시간의 50% 미만 참여 시 출석 미인정
- 지각 또는 조퇴 3회 이상 시 출석 미인정

  - 실습 : 현장실습 100% 이수하고 60점 이상 득한 자

구 분	내 용
실습평가 방법	• 실습 평가(100%) ※ 현장실습 평가(80%), 교육기관 실습 담당자 평가(20%)
	• 평가기준 : 현장실습 평가표(충실성, 성실성, 전문성 등)에 의함 • 평가방법 : 실습담당자가 평가 실시. 단, 가정의 경우 실습 담당자인 멘토와 양육자가 함께 평가서를 작성함 • 실습평가 통과 기준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득한 자

[직무연수과정]

- 온라인 교육 총 16시간 중 90%(15시간) 이상 수료 필수
- 직무연수과정 온라인 수료증은 KIHF온라인교육플랫폼에서 발급 가능
  ※ 실시간 이수율 체크 및 수료 확인은 KIHF온라인교육플랫폼(edu.kihf.or.kr) 〉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수강생 유의사항
  - KIHF온라인교육플랫폼에 가입된 정보는 반드시 본인의 실명 정보여야 하며, 가입정보 또는 수료증 정보가 자격증 신청정보와 다를 경우 자격증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
    ※ KIHF온라인교육플랫폼 회원 탈퇴 시 수료증 조회 및 출력 불가

나. 교육 수료증

○ 교육 수료증 발급 주체

구분	표준교육과정	단축교육과정	직무연수과정
발급처	아이돌봄사 교육기관		자격관리 전담기관
발급명의	아이돌봄사 교육기관장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 교육 수료자는 발급된 수료증을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자격증 발급 신청

다. 재교육 및 미수료자 처리 기준

○ 양성교육 미수료자 처리

- (대상) 교육 수료기준(출석률 등)에 미부합하여 수료 처리가 되지 않은 자
- (조치) 해당 교육생은 차기 교육과정을 재신청하여 전 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실습평가 불합격자 재이수 관리

- (대상) 현장실습 평가 결과 불합격('미실시 또는 미통과' 판정을 받은 자)
- (재이수 의무) 실습평가 불합격자는 반드시 현장실습을 재이수
- (재이수 조건)
  - 표준교육과정: 16시간 이상 재실습
  - 단축교육과정: 4시간 이상 재실습
  - 비용 관리: 추가 실습 수행에 따른 제반 비용은 교육기관별 원칙에 따름
- (사후지원) 교육기관은 실습평가 불합격자가 실습 지도자와 연계하여 재이수 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료 완료 후 2차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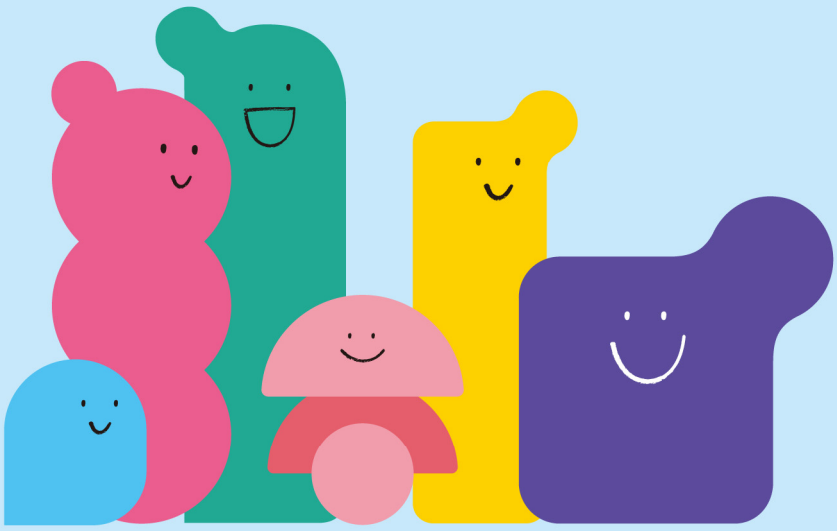

Part III

아이돌봄사 자격증 발급

1. 자격증 발급 개요
2. 자격증 신청
3. 자격검정
4. 적성·인성 검사
5. 자격증 조회

아이돌봄사 자격증 발급

1 자격증 발급 개요

가. 자격증 발급

- 자격증 신청 접수 및 검정 기관: 아이돌봄사 자격관리 전담기관(한국건강가정진흥원)
- 자격증 신청 및 발급방법: 아이돌봄사 누리집을 통한 신청·발급

관련 법령

「**아이돌봄 지원법**」 **제7조(아이돌봄사의 자격)** 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사의 자격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아이돌봄사 자격관리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아이돌봄사 자격관리 전담기관 등의 지정)** 법 제7조제5항 및 제10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각각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 위탁 운영)**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위탁한다.

2 자격증 신청

가.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기한: 연중상시
- 신청방법: 온라인(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 아이돌봄사 누리집(care.idolbom.go.kr) 접속 → 본인인증 후 신청
  - 신청 시 발급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 첨부
- 자격증 발급 절차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정 결과에 따라 자격증 발급

절차	내용	주체
서류 준비·등록	교육수료증, 건강진단서, 자격(면허)증 사본 등 온라인 제출	신청자
구비서류 확인	발급신청서 및 첨부 서류 검토	자격관리 전담기관
승인 / 보완 요청	작성 오류 또는 사진 부적합 시 보완 요청 (14일 이내 보완 / 카카오톡 또는 문자 안내)	자격관리 전담기관
결격사유 확인	결격사유, 범죄경력 유무 조회	자격관리 전담기관
적성·인성 검사 수행	안내에 따라 적성·인성검사 온라인 수행 (7일 이내 수행 / 카카오톡 또는 문자 안내)	신청자
발급 및 출력	온라인(PDF) 즉시 출력	자격관리 전담기관 신청자

※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토요일·공휴일은 포함하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날로 만료

나. 구비서류

- 아이돌봄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서식2호]: 아이돌봄사 누리집에서 직접 작성
- 사진 1매(가로 3cm X 세로 4cm): 온라인 직접 첨부
  - 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 모자 없이 정면 상반신 촬영한 반명함판

    ※ 배경 없음, 흑백/포토샵 불가(해상도 최소 200dpi, 600dpi 이상 권장)
- 아이돌봄사 양성교육 수료증 [서식1호] : 온라인 직접 첨부(교육 대상에 따라 방식 다름)
  - (표준교육과정) 교육기관 발행 수료증 첨부
  - (단축교육과정) 교육기관 발행 수료증 첨부 후 본인 수료 과정, 보유 자격증 체크

    ※ 2개 이상 자격증 소지자일 경우, 다중 체크 가능
  - (직무연수과정) KIHF온라인교육플랫폼(edu.kihf.or.kr)에서 수료증 발급 후 첨부
- 건강진단서(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온라인 직접 첨부
  - “정신 질환자 및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 명시
  - 진단결과에 ‘소견, 사료, 추측’ 등 모호한 문구가 있는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자격(면허)증 사본 또는 자격증명서 : 온라인 직접 첨부

[자격(면허)증 사본 또는 자격증명서 첨부 대상]

1. 직무연수과정 수료자

- 아래에 해당하는 자 중 양성교육 면제자가 아닌 자
  -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육교사
  -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
  -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2. 양성교육 면제자

-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
-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별표2]에 따른 초등학교 정교사 1급, 특수학교 정교사(유치원·초등학교 과정) 1급 자격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제공 동의서[서식3호]: 온라인 동의(체크)

- 자격 발급, 결격사유(범죄경력) 조회에 관련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 확인

※ 개인정보 동의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거부할 경우 자격증 교부 불가

구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	고유식별정보 처리
수집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아이돌봄사 자격관리 전담기관)		
수집·이용 목적	자격 발급 및 이력 관리	결격사유 확인	결격사유(범죄경력 포함) 유무 조회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사진, 성명,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이메일주소, 주소, 휴대전화번호, 기타 자격확인 서류(자격증, 면허증 등)	건강진단서(정신질환, 마약·대마 중독 여부) 결격사유 유무 여부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보유 및 이용기간	자격 상실 후 5년	자격 상실 후 5년	자격 상실 후 5년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제공받는 자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아이돌봄사 교육기관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아이돌봄사 자격확인 및 행정처분 (자격 정지·취소)	(해당 시) 자격 확인, 자격 정지·취소 모니터링	보수교육 대상 확인, 교육 이력 관리 및 수료처리
제공 항목	이름, 생년월일, 성별, 자격번호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자격 상실 후 5년까지		

다. 자격증 발급 및 수수료

○ 발급 수수료: 무료

라. 자격증 재발급

○ 분실, 훼손, 인적사항 변경 등의 사유 발생 시 접수일로부터 최대 14일 이내에 재발급

구분	제출서류	비고
자격증 분실 또는 훼손	재발급 신청서 + 기존 자격증(분실의 경우 제외) + 사진	서식2호
그 밖의 자격증 기재사항 변경	재발급 신청서 + 기존 자격증(분실의 경우 제외) + 사진 +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마. 자격증 신청 체크리스트

○ 자격증 신청서 제출하기 전, 아래 항목에 모두 체크(V)가 되는지 확인

영역	체크(V)	구분	체크리스트
1. 기본정보 확인		자격증 명칭	- 「아이돌봄 지원법」에 명시된 '아이돌봄사' 자격증을 신청하려는 것이 맞나요?
		요건 확인	- 아이돌봄사 교육기관에서 정식으로 운영하는 아이돌봄사 표준 또는 단축교육 과정을 수료한 자가 맞나요? - 직무연수과정 수료자의 경우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교육을 수료한 자가 맞나요? -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면, 양성교육 면제자인지 확인하였나요?
2. 자격확인 및 서류 준비		사진 준비	- 6개월 이내 모자를 쓰지 않고 정면 상반신을 촬영한 반명함판(가로 3cmx 세로 4cm) 사진을 구비하고 있나요?
		건강검진	- 정신질환 관련 검사를 통해 진단받은 것이 맞나요? - 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 중독 관련 검사를 통해 진단받은 것이 맞나요?
		서류 구비	- 지침 23p에 나와있는 신청 서류를 모두 구비하고 있나요? (교육수료증, 건강진단서, 자격증명서 또는 자격증사본(해당자))
		파일 형식 확인	- 서류를 모두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형태(pdf, jpg, png 등)로 구비하고 있는 것이 맞나요?
3. 온라인 제출		본인인증	- 아이돌봄사 누리집(care.idolbom.go.kr) 본인 인증을 완료하였나요?
		개인정보 체크	- 자격증 신청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내용을 읽어보고, 체크하였나요? - 행정정보공동이용, 범죄경력 조회 등 사용에 대해 동의를 하였나요?
		서류 첨부	- 안내된 서류를 순서에 맞춰 알맞은 칸에 첨부하였나요?
4. 최종 확인		제출 정보 확인	- 각 칸에 알맞게 본인의 정보를 기입하고 서류 등록을 완료하였나요?
		제출 상태 확인	- 최종 제출상태를 확인하고, 접수번호를 부여 받았나요? (홈페이지, 카카오톡)

바. 기타 참고사항

○ 제출서류 형태

- 자격증 신청 시 온라인으로 첨부하는 서류 형태는 다음과 같음
  - 사진: 이미지 파일 형태(JPG, JPEG, PNG)
  - 이외 서류: 스캔본(PDF) 및 이미지 파일 형태(JPG, JPEG, PNG)

※ 단, 이미지 파일의 경우 흔들림, 초점 불량 등 내용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 반려될 수 있음

○ 보완 기한 엄수

- 서류 보완 요청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이 취소됨
- 적성·인성 검사의 안내를 받은 후 7일 이내 수행하지 않으면 신청이 취소됨

※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토요일·공휴일은 포함

○ 서류 반환 불가

- 아이돌봄사 누리집을 통해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3 자격검정

가. 자격검정 개요

- 자격검정은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법적 결격사유가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
- 근거법령: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의2, 동법 시행령 제5조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2

관련 법령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의2(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사가 되려는 사람이 제6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4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④ 생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의 요청 방법과 절차,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제5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위탁한다.
1.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사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요청에 관한 업무
2. 법 제7조에 따른 아이돌봄사 자격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생 략)
 나. 아이돌봄사의 자격검정
 다. 아이돌봄사 자격증의 발급
3. (생 략)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의2(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① 아이돌봄사가 되려는 사람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의 요청을 위하여 별지 제1호의 서식의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작성하여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 검정기관: 아이돌봄사 자격관리 전담기관(한국건강가정진흥원)
- 자격검정 절차

신청서류 접수	자격검정	결과 통보	자격 부여
❶ 발급신청서 ❷ 개인정보동의서 ❸ 교육수료증 ❹ 건강진단서 ❺ 자격증사본 또는 자격증명서(해당자)	❶ 서류 적합성 검토 ❷ 결격사유 조회	• 적격 → 발급 • 부적격 → 결과통보 → 이의신청 가능(30일 이내)	자격증 발급

* 자격검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음

나. 결격사유 조회

- 수행주체: 아이돌봄사 자격관리 전담기관
- 방법: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일괄 조회

다. 자격검정 결과 통보

- 통보 기준
  - 적격: 자격검정 완료 후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해 '적격' 처리결과 통보
  - 부적격: 자격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부적격' 처리결과 통보
- 통보 방법: 수신 문자 확인 → 아이돌봄사 누리집 접속 및 본인인증 후 조회
  - 결과 미확인(누리집, 문자 등 안내 미확인, 장기 미접속 방치, 연락처 오기재 등)으로 통보 후 일정기간 경과 시, 본인 확인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

라. 자격검정 이의신청

- 검정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검정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아이돌봄사 누리집에서 이의 신청

  ※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토요일·공휴일은 포함
- 아이돌봄사 자격관리 전담기관에서는 자격검정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결과 통보

4 적성·인성 검사

아이돌봄사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적성·인성 검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가. 관련 법

- 「아이돌봄 지원법」 제7조(아이돌봄사의 자격)

관련 법령

「**아이돌봄 지원법**」 **제7조(아이돌봄사의 자격)**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적성·인성 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아이돌봄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1. ~ 2. (생 략)

나. 검사 방법 및 시기

- 검사 대상자에게는 자격관리 전담기관에서 안내 카카오톡(또는 문자) 발송
- 수행 방법: 온라인 수검
  - 아이돌봄사 누리집을 통해 자격 신청서에 작성한 휴대전화 번호로 안내 링크 발송
- 검사 이행기간: 검사문자 발송일로부터 7일 이내
  - 기한(7일) 내 검사 결과가 '제출완료' 되어야 인정함
  - 기한 내 미이행 시 자격신청은 취소 처리됨

*** [필독] 본인 명의 휴대폰 사용 원칙**

- 본인인증 필수: 검사 접속 시 본인인증(간편인증 포함)을 거쳐야 하므로, 반드시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수행
  * 단, 휴대폰으로 수행 불가능할 경우 PC 응시 가능(자격신청 시 제출한 이메일로 안내된 경로를 통해 수행)
- 신청자 책임: 타인 명의의 휴대폰 사용으로 인해 검사 안내를 받지 못하거나, 인증에 실패하거나, 검사를 제한기간(시간) 내 완료하지 못할 경우, 그에 따른 미수행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다. 검사 세부 사항

- 구성: 125문항 / 제한시간 40분
- 준비: 배터리 50% 이상 확보, 안정적인 네트워크(Wi-Fi/LTE/5G) 환경 권장
- 절차: 개인정보 동의 → 본인인증 → 인증코드 입력 → 검사 시작 → 문항 응답 → 최종 제출

라. 유의사항 및 사후 관리

- 중단 금지: 검사 중단 또는 중도 이탈이 확인될 경우 응시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부정행위 금지: 화면 캡처, 타 IP 접속, 대리 응시 등이 확인될 경우 검사 결과는 무효 처리되며, 자격증 신청이 제한됨
- 시간 제한: 제한시간(40분) 내 실시 필수
- 검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마. 적성·인성 검사 수검 전 체크리스트

- 검사를 시작하기 전, 아래 항목에 모두 체크(V)가 되는지 확인

	체크(V)	구분	체크리스트
1. 응시자격 및 기간 점검		본인 명의 휴대폰	-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준비했나요? (타인 명의 사용 시 본인인증 불가 및 응시 무효)
		PC 확보	- 휴대폰으로 수행 불가한 경우, 검사 응시 할 수 있는 PC를 준비했나요?
		검사 기한 확인	- 안내 카카오톡(또는 문자)을 받은 지 7일 이내인가요? (기한 내 미수행 시 자격 신청 취소)
2. 검사 환경 점검		배터리 잔량	- 휴대폰 배터리가 50% 이상 충분한가요?
		네트워크 상태	- 끊김 없는 환경(Wi-Fi 또는 데이터 신호가 강한 곳) 인가요?
		검사 장소	- Wi-Fi 전환 등으로 IP가 변경될 경우 데이터 전송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정된 장소에서 응시가 가능한가요?
		충분한 시간	- 방해받지 않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었나요?
		기기 호환	- 안드로이드(Android)나 아이폰(iOS) 최신 버전을 사용 중인가요?
3. 응시 중 유의사항 숙지		중단 금지	- 검사 중 중단 또는 중도 이탈하는 경우 응시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지하였나요?
		부정행위 금지	- 화면 캡처나 다른 기기(IP)로 동시 접속, 대리 응시 시 결과가 무효 처리되고 자격증 신청이 제한됨을 알고 있나요?
		시간 제한	- 전체 문항(125문항)을 40분 이내에 모두 체크해야 함을 확인했나요? (제한시간 동안 모든 문항을 풀지 못한 경우 '미응시' 처리됨)
4. 최종 제출 확인		답안 작성 완료 확인	- 문항 중간저장 및 페이지마다 모든 문항을 체크하였는지 확인하였나요? (미확인 또는 누락된 응답이 발견되는 경우, 최종 제출여부 확인 불가함)
		완료 버튼 클릭	- 모든 문항에 답한 후 반드시 [제출] 또는 [종료] 버튼을 눌러 데이터가 저장되었는지 확인하셨나요?

5 자격증 조회

가. 자격증 조회

-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에는 본인의 자격정보 및 자격 상태(발급, 정지, 취소 등)를 온라인으로 상시 확인 가능
- 아이돌봄사의 자격 상태 및 유효여부는 자격증 하단 QR코드 또는 아이돌봄사 누리집 조회 서비스를 통해 상시 확인할 수 있음

구분	방법
자격증 확인(본인)	- 아이돌봄사 누리집에서 확인 및 PDF 출력
자격 유효여부 확인	- 아이돌봄사 자격증 하단 QR 확인 - 아이돌봄사 누리집에서 자격증 정보 입력 후 확인(성명, 생년월일, 자격발급일, 자격번호)
자격증 진위여부 확인 (위·변조 여부 등)	- 아이돌봄사 자격증 하단 QR 확인 - 아이돌봄사 자격증 하단 2D 바코드 확인 ※ 바코드를 통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 '마크애니' 프로그램 다운로드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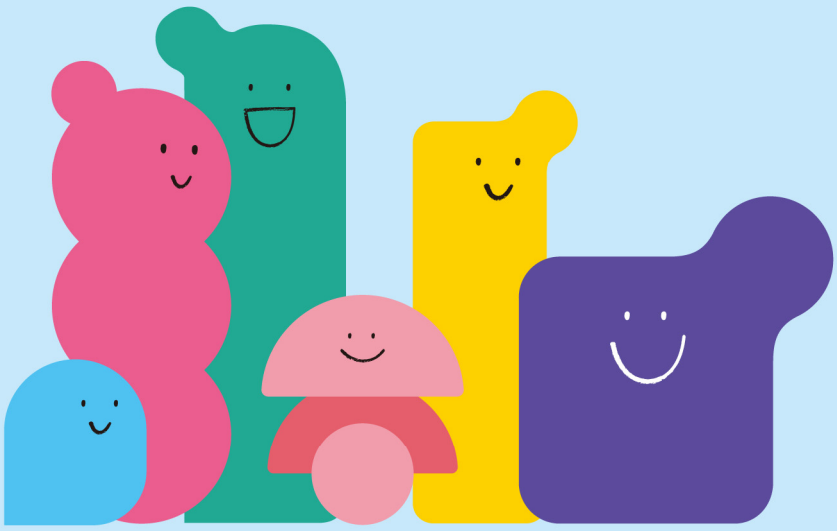

Part IV

아이돌봄사 자격 관리

1. 보수교육
2.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

아이돌봄사 자격 관리

1 보수교육

가. 보수교육 개요

- 아이돌봄사는 자격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난 후부터 연 1회 보수교육 이수하여야 함
- 운영주체: 아이돌봄사 교육기관

관련 법령

「**아이돌봄 지원법**」 **제9조(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아이돌봄사의 양성을 위하여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교육기관으로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아이돌봄 지원법**」 **제10조(보수교육)** ① 아이돌봄사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제5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⑥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사 보수교육을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이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위탁한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위탁받은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 교육 시간 및 방식: 총 16시간, 집합교육 원칙
- 수료 요건: 총 교육시간의 15시간(90%) 이상 출석한 자

나. 교육 신청

- 신청 대상: 아이돌봄사
- 신청기간: 각 교육기관별 보수교육 운영 일정에 따라 신청
- 접수방법: 아이돌봄사 교육기관으로 신청

다. 교육신청 시 유의사항

- 이수 의무
  - 아이돌봄사는 매년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단, 자격증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제외
- 미이수 시 제재
  - 연속 3회 이상 보수교육 미이수 시, 자격정지(6개월 이내) 대상이 될 수 있음

관련 법령

「**아이돌봄 지원법**」 **제10조(보수교육)** ① 아이돌봄사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6조(보수교육)**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자격증을 취득한 후 1년이 지난 아이돌봄사를 대상으로 매년 30시간 이내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시간으로 한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32조(아이돌봄사 자격정지)**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단서 생략)
3. 제10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라. 세부 교육내용

- 교육시간: 총 16시간(기본과정 8시간 + 특화과정 8시간)
- 교육과정
  - 기본과정(8시간)

분야	교과목	교육시수
아이돌봄서비스 개요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이해	1
	아이돌봄의 직업윤리	1
	아이돌봄사의 직무역량과 성장	1
아동 발달의 이해	영아 발달	1
	유아 발달	1
	학령기 발달	1
아동존중과 인권·건강관리	아동의 안전	1
	아동의 건강	1
기본과정 소계		**8**

- 특화과정(8시간): 3개 모듈 중 1개 과정 선택 이수

분야		교과목	교육시수
영아돌봄 (8시간)		신생아 돌봄과 발달지원	1
		영아기 상호작용	1
		영아기 행동지원	1
		영아기 돌봄·놀이 환경 조성	1
		영아 종일돌봄 일과 구성 및 운영	1
		영아 발달지원: 감각놀이를 중심으로	1
		영아학대(0~2세) 예방의 이해	1
		영아(0~2세) 인권침해와 학대 사례 분석	1
소 계			**8**
유아돌봄 (8시간)		유아기 상호작용	1
		유아기 돌봄·놀이 환경 조성	1
		유아기 행동지원	1
		유아 신체놀이 실제	1
		유아 언어놀이 실제	1
		유아 미술놀이 실제	1
		유아학대(3~5세) 예방의 이해	1
		유아(3~5세) 인권침해와 학대 사례 분석	1
소 계			**8**
사례중심 돌봄 (8시간)	학대예방 (택2시수)	영아학대(0~2세) 예방의 이해	1
		영아 인권침해와 학대 사례 분석	1
		유아학대(3~5세) 예방의 이해	1
		유아 인권침해와 학대 사례 분석	1
	소 계		**2**
	상황별 돌봄 (택6시수)	정기돌봄 운영과 대응	1
		단기·긴급돌봄 운영과 대응	1
		질병감염 아동 돌봄	1
		기관 내 돌봄 지원 실무	1
		학령기 상호작용	1
		학령기 돌봄·놀이 환경 조성	1
		학령기 아동행동지원	1
		예술·탐구놀이 실제	1
		양육자와의 대화기술	2
		가족특성을 고려한 소통과 협력	1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소통과 협력	1
		아동 행동/발달 특성별 지원	1
		특별한 요구를 가진 아동 지원	1
		아이 마음읽기와 회복력 지원	1
		응급상황별 현장사례 탐구	2
		안전한 외부활동과 아동 지원	1
	소 계		**6**
특화과정 소계			**8**

마. 교육 수료 기준

- 수료기준
  - (수료 시간) 전체 교육과정(기본 8시간+특화 8시간, 총 16시간) 중 15시간(90%) 이상 출석한 자에 대해 수료 인정
  - (증빙 발급) 수료 기준을 충족한 자에게 교육기관장 명의의 수료증[서식1호] 발급

바. 재교육 및 수료 불인정 기준

- 교육 이수 원칙
  - 기본과정과 특화과정 중 하나라도 미이수 시, 당해연도 수료 인정 불가
  - 보수교육 수료증은 각 과목별이 아닌, 전체 과정을 모두 마쳤을 때 1장으로 발급됨
- 수료 불인정
  - 대리참석 및 부정 출결, 빈번한 지각·조퇴·외출 및 학습 태도 불량 적발 시 수료 불인정함
  - 교육 시간의 15시간(90%) 미만 참석 시 재교육이 원칙임. 단, 불가피한 사유로 이수하지 못한 경우, 증빙 후 보충 이수 가능

2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

가. 자격정지

- 아이돌봄사가 「아이돌봄 지원법」 제32조의 각 호에 해당하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음. 단, 1호(아이에 대한 폭행·상해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정지시켜야 함.
-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자격정지 사유가 존재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소명되었다고 볼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검찰의 기소, 지자체 아동보호팀의 아동학대 사례판단 등) 자격정지를 할 수 있음.

관련 법령

「**아이돌봄 지원법**」 **제32조(아이돌봄사 자격정지)**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정지시켜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아이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아이를 모욕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다. 아이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행위
   라. 아이의 주거지에서 행한 절도 등 불법행위
   마.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장소에서 「청소년보호법」 제2호제4호가목에 따른 청소년 유해약물을 이용하는 행위
2. 아이돌봄사가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아이 또는 보호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3. 제10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보호자에게 불필요한 서비스를 알선·유인하거나 이를 조장한 경우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제5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아이돌봄사의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에 관한 권한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나. 자격취소

- 아이돌봄사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자격을 취소하여야 함

관련 법령

「**아이돌봄 지원법**」 **제33조(아이돌봄사 자격취소)**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아이돌봄사가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아이 또는 보호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를 하여 같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3의2.「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3의3.「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
4. 제32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5. 제32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제32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기간에 아이돌봄사로 활동한 경우 또는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7. 제6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제5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아이돌봄사의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에 관한 권한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 행정 제재 조치

○ 자격 정지·취소에 따른 통지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아이돌봄사의 자격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한 경우, 처분일로부터 지체 없이 자격관리 전담기관에 공문 등을 통해 그 사실을 통지여야 함
- 처분 내역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① 처분 대상자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등)
  ② 처분 내용(정지·취소 구분, 정지기간 등)
  ③ 처분일자 및 효력 발생일
  ④ 처분 사유 및 관련 근거

○ 과태료

- 자격이 정지·취소된 상태에서 자격증을 활용하여 아이돌봄사로 활동한 경우, 자격증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아이돌봄사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타인의 자격증을 빌려 사용한 경우,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아이돌봄 지원법」 제8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관련 법령

「**아이돌봄 지원법**」 **제8조(명의대여 등의 금지)** ① 아이돌봄사는 다른 사람에게 제7조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 법에 따른 아이돌봄사가 아닌 사람은 아이돌봄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아이돌봄사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되며,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3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를 위반한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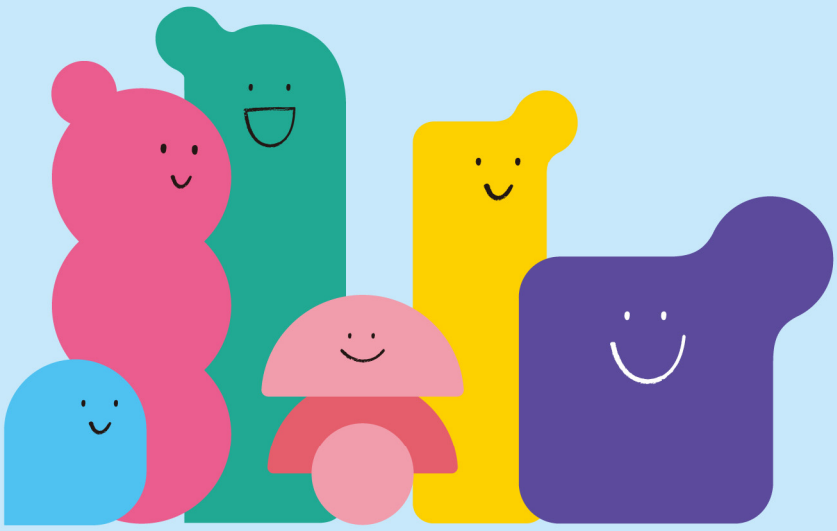

Part V

관련서식

[서식 1호] 교육 수료증

[서식 2호] 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서식 3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서식 4호] 범죄경력 조회 요청(동의)서

[서식 5호] 아이돌봄사 자격증 서식

관련서식

1 교육 수료증

제 호

수 료 증

성 명 :
생 년 월 일 :
교육과정명 : _____(_____ 시간)
교 육 기 관 :

위 사람은 ○○○에서 실시한 아이돌봄사 양성교육과정 또는 보수교육(○○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 장(직인)

* 보수교육의 경우 전체 과정(기본+특화)을 1장으로 발급

2 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아이돌봄사 자격증 [ ] 발급 [ ] 재발급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V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발 급 30일 재발급 14일

신청인	성명(외국인은 영문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사진(3cm×4cm)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	전자우편	

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 시에만 작성합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아이돌봄사 자격증의 [ ] 발급 [ ] 재발급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귀하

첨부 서류	발급 신청 시	1.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정면 상반신을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합니다) 1장 2. 의사의 진단서,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등 정신질환자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3. 아이돌봄사 양성교육 수료증.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합니다. 가.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 나.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 다.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과정으로 한정합니다) 정교사 1급 자격	수수료 없음
	재발급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1.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합니다) 나.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정면 상반신을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합니다) 1장 2. 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1호 각 목의 서류 나.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자격 검정	→	발급 결정	→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아이돌봄사 자격 발급 및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아이돌봄사 자격 발급 및 관리 업무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근거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및 제24조의2
-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제6조의2,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2.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구분	수집·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고유식별정보	자격 발급 및 이력 관리, 결격사유 유무 및 범죄경력 유무 조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자격 상실 후 5년

※ 귀하는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거부 시 아이돌봄사 자격 발급 및 관리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 **고유식별정보 수집·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구분	수집·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일반 정보	자격 발급 및 이력 관리	성명, 사진, 휴대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자격증 및 면허증, 교육수료증	자격 상실 후 5년

※ 귀하는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거부 시 아이돌봄사 자격 발급 및 관리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4.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구분	수집 및 처리 목적	처리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민감 정보	자격 결격사유 확인	건강진단서(정신질환, 마약·중독 여부), 결격사유 유무 여부(범죄경력 포함)	자격 상실 후 5년

※ 귀하는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거부 시 아이돌봄사 자격 발급 및 관리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5.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아이돌봄사 자격확인 및 행정처분 (자격 정지·취소 등)	이름, 생년월일, 성별, 자격번호	자격 상실 후 5년까지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해당 시) 자격 확인, 자격 정지·취소 모니터링		
아이돌봄사 교육기관	보수교육 대상자 확인, 교육 이력 관리 및 수료처리		

※ 귀하는 위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거부 시 아이돌봄사 자격 발급 및 관리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6.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아래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공동이용 행정정보: **결격사유 유무 조회, 범죄경력 유무 조회**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이에 확인합니다.

20 . . .

성명 : (서명 또는 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귀하

4 범죄경력 조회 요청(동의)서

■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외국인의 경우)	
	주소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본인은 [ ]아이돌봄사가 되려는 사람
[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로 활동하려는 사람 으로서,
[ ]중앙지원센터·광역지원센터·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의2제1항·제2항 또는 제11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1항·제2항·제3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시·도경찰청(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범죄경력조회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영문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을 모두 적습니다.
2. 서명란의 동의자의 이름과 서명은 반드시 자필로 적습니다.

5 아이돌봄사 자격증 서식

■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6서식]

제 호

아이돌봄사 자격증

성 명:

생년월일:

사 진
3㎝×4㎝

위 사람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사의 자격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성평등가족부장관 직인

2026년도

아이돌봄사 자격관리 안내서

제 작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kihf.or.kr

지침과 관련된 사항은 아이돌봄사 자격관리 전담기관(1577-9386)을 통해 우선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지침은 사전 승인 없이 무단 전재 및 배포를 금합니다.

성평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